###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 여 수 시 보

시정방침

/3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수준높은 교육복지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1625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17-1629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6

####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2017-1283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 여수시 조례 제2017-1284호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11
- 여수시 조례 제2017-1285호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16

회				
람				

여수시 공고 제2017- 1625호

##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16.

여 수 시 장

####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기간(예정): 2017. 8.(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18.12.31.

사업의 종류 및	사업예정지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명칭(사업명)	(위치)		(성명) 및 주소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사업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36-3번지 일원	○ 도로개설 - L= 104.89m, B=12m(1,189㎡)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	여수시 도로과	2017. 8.16. ~2017. 8.30.(14일이상)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7. 8.16.~2017. 8.30.(14일이상)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4. 토지 및 지장물조서: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2061-659-4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편입면적 (m²)
1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77-8	도로	384	36
2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22-2	도로	248	150
3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163	도로	5,282	155
4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21-1	도로	241	241
5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20-1	도로	116	116
6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36-3	도로	73	73
7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36-1	답	1,908	45
8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22-3	답	1,200	80
9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21-2	답	1,230	207
10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20-3	답	2,354	26
11	여수시 소라면관기리	420-2	답	53	53
12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20-4	답	7	7
	합 계			13,096	1,189

# 의 견 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전라남도 여수시장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u> </u>	주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2017년 8월 16일

#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8. 16. ~ 2017. 9. 5.(20일간)

3. 공시송달대상 : 아래참조

4. 공시송달내용

-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 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의처: 여수시 교통과 교통시설팀(☎061-659-4144)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대상내역 차 량 유 자 명령 차 량 소 차량보관 차 명 무단방치장소 번호 번 호 주 성 장 소 소 경북80가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정 \* 미 여수시 봉계동 대광오투빌 뒤편길 이스타나 동국폐차장 7817 166-11, 19/삼성타운 107동 2\*\*호 KHUJAKU LOV FARRUKH 역수시 율촌면 월산리 1509 부근 도로변 광양시 광양읍 회암길 3-25, 49저4844 라세티 대성폐차장 노블레스 3\*\*호

제17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여수시장 기계

2017년 8월 /6 일

여수시 조례 제1283호

붙임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설립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1.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영주차장(여수시청 부설주차장 포함) 관리 및 운영 사업
    - 나.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사업
    - 다. 종량제 봉투 및 배출 스티커 판매 사업
    - 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
    - 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 2.「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 제3조(정관) 공단의 설립 시 정관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와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이사) 시장은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제출)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매 사업연

도마다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공기업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시가 해당 사업연도에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을 제외한 불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① 공단은 임직원의 인사, 복리후생,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공단에 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지방공기업법」제80조제6항에 따라 공단이 승계한 자본금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여수시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보며, 공단은 여수시도시공사의 임직 위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17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中个小水 "人"

2017년 8월 / 🔊 일

여수시 조례 제1284호

붙임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1부.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여수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지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 2. 기금의 운용수입금
  - 3. 그 밖의 잡수입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과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75조제2항에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 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 ② 기금중 해당 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 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예치금액의 예치 · 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여수시의 지정금고(「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인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하여야한다.

-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영 제7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이내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 등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
-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팀장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 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이하"위원회)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과 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여수시의회 의원 1명,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 1. 기획예산과장
  - 2. 도시계획과장
  - 3. 건설방재과장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금의 조성 및 사용계획
  - 2. 기금의 운용방법
  -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中个小水水水

2017년 8월 16일

여수시 조례 제1285호

붙임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여수시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 2. 국가유공자, 장애인(1급-3급) 세대
  - 3.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
  - 4. 3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세대
-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 제6조(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 ④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방역 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방문방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 문 방 역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세대주 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락처		
신 청 자	주택형태	□ 아파트 및 □ 단독주택	공동주택 (	m²)	
해당란에 표기	○ 방역 희망 일시( 20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세대 [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1급-3급) 세대 [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또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세대 또는 다문화 가정세대				
「여수시 방문방역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2호서식]

#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

### ○ ○ 동주민센터

	신청 일자	신청자		주 소	처 리		방문
번호		성명	연락처	(상세하게기재)	예정일	완료일	방역자
1							
2							
3							
4							
5							
6							
7							
8							
9							
1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방역약품 관리대장

품명: , 단위:

QJ -J	0) 7	)] <u></u>	기 긔		약품사용	나용 내역		
일자	입고	사용	잔 량	성명	주소	약품 사용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